

## □ 개요

- 전세(사기)피해자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리신규 · 저리 대환 상품을 출시하는 등 베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
  - (저리신규) 전세사기피해자가 신규임차주택으로 이사가는 경우에 임차보증금을 베팀목 대출로 지원
  - (저리대환) 전세사기피해자가 기존 전세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리의 기금대출로 대환

## □ 추진방안

- (대출대상자) 전세피해금액이 전세보증금의 30% 이상인 사람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(특별법 대상자 제외)
  - 저리신규 :
    - ①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
    - ②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마수령액
    - ③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
    - ④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
  - 저리대환 :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(전세피해금액은 임차권등기명령 설정금액) 중
    - ①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
    - ②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
    - ③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
    - ④ 전세피해주택에 경·공매가 개시된 경우
    - ⑤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
    - ⑥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

- (소득·자산 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/ 자산 5.06억원 이하
- (임차보증금) 3억원 이하(대환 5억원 이하)
  - \*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: 저리신규 3억원, 저리대환 5억원 이하
- (주택면적 기준) 전용 85m<sup>2</sup> 이하(수도권 제외한 읍·면지역 100m<sup>2</sup>이하)
- (대출한도) 2.4억원 이하(대환 4억원 이하),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
- (대출기간) 2년 단위(총 4회 연장, 최장 10년). 단, 저리대환의 경우 6개월 이며, 이후 해당 보증기관(HF·SGI)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
- (대출금리)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1.2% ~ 2.7%

부부합산 연소득	임차보증금	1.4억원 이하	1.7억원 이하	1.7억원 초과
5천만원 이하		1.2%	1.3%	1.5%
6천만원 이하		1.5%	1.6%	1.8%
7천만원 이하		1.8%	1.9%	2.1%
1억원 이하		2.1%	2.2%	2.4%
1.3억원 이하		2.4%	2.5%	2.7%